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명칭) 이 위원회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16.01.27.>

제2조 (목적) 이 위원회는 서울신학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의 입학시험 전반에 관한 자체감사를 통해 본교의 입학전형 시행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관리·감독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기능) 이 위원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입학 부정방지 대책 수립
2. 수험생의 이의제기에 대한 내부 감사
3. 대학입학 전형의 사전·중간·사후 자체감사
4. 기타 입학시험과 관련된 제반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입시전형 관련 경험이 있는 전임교원과 입학업무 경험이 있는 직원으로 한다.

[본조개정 2016.01.27.]

제5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총장이 선임한다. <신설 2016.01.27.>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괄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입학시험전형 일정에 따라 1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해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자격제한) ① 당해 연도에 자녀가 본교에 입학지원 예정인 경우에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장)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01.27.>

②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장)은 입학전형과 관련된 사항에 관여할 수 없다.<신설 2016.01.27.>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01.27.>

제9조 (회의 소집과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0조 (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위원장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 ②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